

7. 법인세법중개정법률(안)입법예고

재정경제부공고 제1998-104호 1998. 7. 11

개 정 취 지

고금리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저축소득자에 대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개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상향조정하는 것과 균형을 맞추는 한편, 부족세수도 보전하려는 것임.

주 요 내 용

징수세율을 20퍼센트에서 22퍼센트로 상향 조정함.

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

주택회보